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7. 10.>

신기술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실명확인	처리기간 120일

신기술 명칭			
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	상호 또는 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생년월일
	주소		
신기술 내용 ※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			
신기술의 범위			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신기술의 내용(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·진보성·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)에 관한 서류 2.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.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·공립 시험기관,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(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) 5.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➜	접수	➜	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(보완요청) 관보공고	➜	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	➜	신기술 등록 및 지정	➜	통보 및 사후관리
신청인		전문기관		국토교통부 전문기관		전문기관		국토교통부 전문기관		국토교통부 전문기관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